

공 고

◎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2-20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20일

대구전파관리소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

성명	허가번호	주소	위반내용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김○곤	42-2020-60-0000005 (503신○호)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	무선국정기검사불응 (1차위반)	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
용○해운(주)	42-2017-60-0000001 (502대○호)	부산광역시 중구	무선국정기검사불응 (1차위반)	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, 제25조(무선국의 운용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청문일자: 2022. 7. 18.(월) 10:00

4. 청문장소: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(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)

5. 참고사항

가.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“의견제출서”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청문(의견제출)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: ☎054-282-2367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3-749-2833, 팩스053-749-28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